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지침

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 보안 및 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의 공공질서 유지 및 사고예방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본교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정보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동남보건대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다.

설치장소	현황		설치목적	운용시간	화상정보관리
	설치위치	수량			
대학본부	지하1층 (주차장)	12	시설물 방범 (안전관리,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도난, 차량파손)	24시간	녹화
	1층	4			

설치장소	현황		설치목적	운영시간	화상정보관리
	설치위치	수량			
대학본부	2층	4	시설물 방법 (안전관리,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도난, 차량파손)	24시간	녹화
	3층	2			
	4층	2			
	5층	2			
	6층(박물관)	4			
	7층(대회의실, 리셉션홀)	2			
	옥탑	1			
사담기념관	1층	4			
노송관	1층	3			
	3층 (야외주차장)	2			
유치원	1층	2			
	1층 (버스주차장)	4			
	옥탑	1			
동남관	1층	3			
	옥탑	1			
학생회관	1층	3			
	2층	1			
	3층	1			
	4층	1			
	5층	1			
행정관	지하1층 (주차장)	10			
	1층	4			
	옥탑	1			
학리관	1층	4			

설치장소	현황		설치목적	운영시간	화상정보관리
	설치위치	수량			
학술정보관	1층	11	시설물 방법 (안전관리,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도난, 차량파손)	24시간	녹화
	3층	5			
해운관	1층	5			
	옥탑 (운동장)	1			
경비실	정문	1			
	후문	2			
계		104			

제4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관리 책임자	총무팀	팀장	한호선	031-249-6251
접근 권한자	총무팀	직원	양철승	031-249-6256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건물 지정장소 등

제7조(영상정보 처리방법)

영상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축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운영 사무 위탁)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확인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서식1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 ④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11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영상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제한구역 설정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한다.

제12조(영상 녹화물의 유출금지)

영상정보 처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